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클라우드컴퓨팅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1. 11, 시행 2023. 1. 12.)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신설(제15조의2)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평가 및 인증 절차·방법 등을 마련함

나.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제15조의3)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다. 보안인증의 인증표시 및 홍보 신설(제15조의4)

보안인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인증 표시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함

라.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신설(제15조의5)

평가기관이 보안인증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후평가하기 위한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

마. 보안인증의 수수료 신설(제15조의6)

평가기관의 보안인증 신청인 대상 수수료 부과 근거 및 산정 기준,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함

바.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신설(제15조의7)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

사.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신설(제15조의8)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아.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5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업무 중
고시로 정한 업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
(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
시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
(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의 신청을 받은 지정평가기관은 인증신청인의 클라
우드컴퓨팅서비스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
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평가는 서면평가 또
는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평가기관의 이해관
계, 평가역량, 인증정책 등을 고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인증평
가를 직접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평가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평가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인증서(이하 ‘보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보안인증서의 발급 등 보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보안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신청의 방법·절차는 제15조의2에 따른다.

제15조의4(보안인증의 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안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의5(보안인증의 사후관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은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은 사후관리 중 인증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6(보안인증의 수수료) ① 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평가에 투입되는 보안인증평가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안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7(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①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전담인력(상시근무 보안인증평가원 4명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능력, 피해보상 대책을 갖출 것
3.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출 것
4.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을 보유할 것

②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15조의7에 의한 방법·절차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또는 인증평가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평가 및 재지정 등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8(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3조의2제5항 및 제6항, 법 제23조의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업무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8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자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보안인증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1) 보안인증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인증 또는 인증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2) 천재지변, 보안인증평가원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마.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부 칙

이 영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의2(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의 신청을 받은 지정평가기관은 인증신청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평가기관의 이해관계, 평가역량, 인증정책 등을 고려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서 하여금 인증평가를 직접 수행

하게 하거나 다른 평가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정평가기관은 인증평가의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평가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신청인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이하 ‘보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보안인증서의 발급 등 보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보안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신청의 방법·절차는 제15조의2에 따른다.

제15조의4(보안인증의 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안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의5(보안인증의 사후관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은 보안인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은 사후관리 중 인증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정평가기관

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6(보안인증의 수수료) ① 평가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증평가에 투입되는 보안인증평가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안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7(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①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전담인력(상시근무 보안인증평가원 4명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능력, 피해보상 대책을 갖출 것

3.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출 것

4.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을 보유할 것

②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15조의7에 의한 방법·절차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또는 인증평가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절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 4 (생략)

[신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차, 지정평가 및 재지정 등 인증 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무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8(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3조의2제5항 및 제6항, 법 제23조의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업무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신설>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300	600	1,000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300	600	1,000
다.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300	600	1,000
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300	600	1,000

[별표 3] 신설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300	600	1,000
나.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300	600	1,000
다.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300	600	1,000
라.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300	600	1,000
마.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300	600	1,00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신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자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보안인증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1) 보안인증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인증 또는 인증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		
2) 천재지변, 보안인증평가위원 부족 등의 사유로 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마. 법 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6467